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
의 안 번 호 2277 제출연월일 : 2024. 7. 26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"부착한"을 "붙인"으로, "부의하는"을 "회의에 부치는"으로, "함유"를 "포함"으로, "판명된"을 "밝혀진"으로, "가금"을 "조류"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등을 국민이 알기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고치는 내용으로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 등 3개의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.

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
제1조(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의 개정)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3조제9호 중 "부착한"을 "붙인"으로 한다.

제2조(「식품안전기본법」의 개정)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제6호 중 "부의하는"을 "회의에 부치는"으로 한다.

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함유"를 "포함"으로 한다.

제24조제3항 중 "판명된"을 "밝혀진"으로 한다.

제3조(「식품위생법」의 개정)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호 및 제2호 중 "함유"를 각각 "포함"으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"함유"를 "포함"으로 한다.

제93조제1항제3호 중 "가금"을 "조류"로 한다.

제97조제9호 중 "부착한"을 "붙인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3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	제43조(벌칙)
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	
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	
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	
수 있다.	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9.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	9
무원이 <u>부착한</u> 게시문 또는	<u>붙인</u>
봉인 등을 함부로 제거하거나	
손상시킨 자	

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식품안전정책위원회) ①	제7조(식품안전정책위원회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	②
을 심의·조정한다.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그 밖에 식품등의 안전에 관	6
한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	
<u>부의하는</u> 사항	회의에 부치는
제15조(긴급대응) ① (생 략)	제15조(긴급대응) ① (현행과 같
	음)
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	2
산・판매등이 되고 있는 식품등	
이 유해물질을 <u>함유</u> 한 것으로	<u>포</u> 함
알려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	
해우려가 제기되고 그로 인하여	
국민 불특정 다수의 건강에 중	
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	
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	
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긴	
급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위원회	
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긴급대응	
방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	

여야 한다. 다만,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긴급대응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있다.

- 1. ~ 6. (생략)
- ③ ~ ⑤ (생 략)
- 제24조(정보공개 등) ①·② (생략)
 -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법령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식품등및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공개할 수 있다.

④・⑤ (생 략)

·
1. ~ 6. (현행과 같음)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24조(정보공개 등) ①・② (현
행과 같음)
③
<u>밝혀진</u>
.
④·⑤ (현행과 같음)
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기준·규격이 정하여지지	제6조(기준·규격이 정하여지지
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	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
매 등 금지) 누구든지 다음 각	매 등 금지)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	
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	
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57조	
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(이	
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의 심	
의를 거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	
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	
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<u>,</u>
1.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	1
기준・규격이 정하여지지 아	
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	
과 이를 <u>함유</u> 한 물질을 식품	<u>포함</u>
첨가물로 사용하는 행위	
2. 제1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이	2
<u>함유</u> 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	<u> 포함</u>
매할 목적으로 제조·수입·	
가공・사용・조리・저장・소	
분・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	
제15조(위해평가) ① 식품의약품	제15조(위해평가) ①

안전처장은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등이 제4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식품등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식품등의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그것이 위해식품등인지를 결정하여야한다.

② ~ ⑥ (생 략)

제93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·가공·수입 또는 조리한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
- 1. · 2. (생략)
- 3. 가금 인플루엔자
- ② ~ ④ (생 략)

제97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- 1. ~ 8. (생략)
- 9. 제79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

포함
.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제93조(벌칙) ①
1.•2. (현행과 같음)
3. <u>조류</u>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97조(벌칙)
1. ~ 8. (현행과 같음)
9

무원이 <u>부착한</u> 봉인 또는 게	붙인
시문 등을 함부로 제거하거나	
손상시킨 자	
10. (생 략)	10. (현행과 같음)